

제55회 제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10월 23일 상오 11시 15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10월 23일 상오 11시 4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부의장 정 응 표

5. 출석의원

재적의원 16명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박두순 이정권 강영낙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총무과장 방재수 외 각 과장

7.의사일정

· 보고사항

-비료상조합 및 정미업자로부터 제출한 진정서 접수상황보고

· 부의안건

-항동공설시장 부정추첨에 관하 건

· 토의사항

· 비료상조합 및 정미업로부터 제출한 진정서 접수상황보고

◇서기 박 찬 대 낭독

- 김창희 의원 : 본 건 비료상조합 및 정미업자로부터 들어온 진정서의 내용과 여한 선착장 양륙비가 가마니당 무려 50환식이나 인상케 되었음은 인

접여수항에 비교하여 2,30환의 고가일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각종곡물 및 비료 등의 입출항이 타도시로 흘러가는 현상으로서 일방적인 노동자 생계를 위하여 항구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전체시민의 생활문제에 위협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 본 건 각 의원께서 심심 검토하시어 선처하여 주시옵기 요망하옵니다.

◇부의장 정 응 표

- 진정서 처리방안을 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균 의원 : 양건 공회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진상을 조사 후 차기 의회에 보고토록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3청이 있었음. 표결결과 재석 13명 전원가결

· 항동공설시장 부정추첨에 관한 건

◇김 성 균 의원

- 본 건 항동시장 부정추첨은 전 시민을 격분시켰다. 이 진상을 일일 속히 공개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의혹을 해소시키고자 거 10월 5일 개최 좌담회 석상에서 조사위원회(6인)를 구성하여 조사케한 바 있으나 전반 위촉하였던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금반 정식으로 본 회의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케 하여 조사토록 함과 아울러 금차 회기를 향후 3일간 연장하여 래 25일에 보고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음.

◇김 남 진 의원

- 김성균 의원의 동의 방안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전반위촉하였던 위원을 그대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 3인을 새로 선임토록할 것을 개의하며 그 선정은 의장이 지명토록 일임한다.

- 재청..삼청이 있었음. 개의표결결과 재석 13명 중 전원가결
- 회기연장 동의 재석 13명중 가 11표 가결
- 조사위원으로는 김남진, 김삼성, 김상태 의원을 지명

◇부의장 정 응 표

- 산회할 것을 선언

(상오11시 4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10월 23일

시의원 김 남 진

시의원 천 철 수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55회 제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개 의 : 단기 4289년 10월 25일 상오 10시 25분

2.폐 의 : 단기 4289년 10월 25일 하오 12시 35분

3.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사 회 : 의장 김 경 인

5.출석의원

재적 16명 전원

결석의원 없음

6.출석공무원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의사일정

· 보고사항

1.제54회 회의록 통과

2.진정서 접수(노인당) 상황보고

3.항동공설시장 부정충첨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 부의안건

1.항동공설시장 부정추첨에 관한 건

8.토의사항

· 제54회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김 상 대 의원

- 김상대 의원의 발언 중 누락된 곳을 지적

◇서기 박 찬 대

- 즉시 수정하겠음.
- 그 외 이의 없으므로 통과

- 진정서 접수(노인당)상황보고

◇서기 박 찬 대

- 낭독

◇정 응 표 의원

- 공산국가의 정책은 근로가치의 유무를 분별하여 노약자에 대한 처우를 하는 것이나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고령노인들에 대하여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접대하는 것이며 유독 우리 국민성은 자고로 동양예의 지국가인 미덕을 살려야 할 것이다. 목포를 말하면 유달산과 삼학도를 연상케 되는데 이 유서깊은 유달산록에 노인당을 건축한다는 것이니 명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할 것을 전제로 행정부에 이송할 것을 동의하다.

- 사청까지 있어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전원가결

- 항구공설시장 부정추첨 진상조사결과 보고

◇김 상 태 의원

- 본의원의 김삼성 김남진 의원 3인이 본 건 조사에 당하였으나 수사권이 없는 우리들로서는 증인신문 정도 외는 타 도리가 없었다. 본 건에 관하여 본건 주동자인 전상공계장 이병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 21개 점포중 13개 점포는 정당한 것이었으며 그 중 8개점포만 다음과 같은 불가부득이한 곳에 부여하였다고 한다.

- 1,상이용사회 2개 점포
- 2,서 수사주임 전직경찰 2개 “
- 3,언론계 모씨 1개 “
- 4,이정권 시의원 1개 “
- 5,김기채(전 시직원) 1개 “
- 6,박현기(“) 1개 “

- 전기 박현기 분은 이부시장이 관련된 것 같으나 전상공 주무자 말에 의하면 추첨으로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전 상공계장에게 적당히 사정을 봐줄 수 있으면 봐주라고 하였으나 그 후 추첨으로 결정이 되자 부시장은 전상공 주무자를 불러 본 건에 대하여 고려하지 말라고 확실히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박현기는 전 시 직원인 만큼 친한 사이여서 동지간의 입장에서 동정하여 단독의 자의로 분여하였다 한다.

· 향동공설시장 부정추첨에 관한 건

◇김 창 희 의원

- 본 건 향동공설시장 부정 추첨 사실은 행정부가 1,163명의 시민을 둘러 먹은 일대 불상사라 아니 할 수 없다.

(누락)된일이라 하겠으며 간부급에 이르기까지 징계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답변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강 영 락 의원

-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지방자치법 제 19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관리와 처분은 행정기관에 맡기기로 되어 있는데 국민의 수임자인 공무원이 여사 부정행위를 감행하였다는 것은 국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형법 제131조에 저촉되는 형사문제라고 본다.

- 본인의 진술정도인 오늘의 미급된 보고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충분히 적발하여 문안으로 구신 보고토록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며 대전의 예를 인용하더라도 집행부 책임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든가 하여야 할 것이라는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바이다.

◇정 응 표 의원

- 시의원 생활 5년에 오늘과 같은 비애를 느낀 것은 처음이다. 시청직원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일대 사기사건을 감행하여 전체시민을 흥분케 하였으며 국가의 안위를 쟁전에 휩싸이고 분투하다가 불구된 상이용사들을 앞잡이를 세워 악질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처사를 하였다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 일례-영해동 이광주씨 당첨 경위 설명(별지 초안 참조)

그리고 지능적으로 본 사기사건을 감행한 점은 시에는 부시장 경찰서 언론계 사후수습을 하하기 위해 상이용사회 등에 분여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재무과장에게 물졌으나 1인이 20여명의 신청을 한 사람도 있는데 무제한하고 납세필증명을 남발하였던 점과 산업과에서는 납세필증명도 없고 신청자인도 없는 신청서를 접수하였다는 등 그 책임을 묻고 싶다.

또한 시기적으로 마침 전통있는 남교동시장 화재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체 시민이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때에 남교동 전당포 적지(跡趾, 자리)에 2,30개의 점포를 건축하도록 한 처사를 비난한다.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처리하는 것은 당 시의회의 무능을 여실히 폭로하는 것이니 공명정대한 처리방법을 강조하는 바이다.

◇총무과장 방 재 수

- 마침 남교동 화재지구의 면세문제를 직접시찰키 위하여 사세청 직세과장이 래목하게 되어 시장님께서 불참하셨으므로 시장님의 의도를 받들어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사과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 본건에 대한 직접적인 과오는 당무자에게 있을지라도 그 원인은 주위의 모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으며 이로 인한 간부진의 도의적인 책임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도 즉시 공중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에 대한 입주 수속을 진행중에 있으며 당무자로부터 자진사퇴의 의사가 있

어 즉시 수리하였으며 방금 도인사위원회에도 회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급의 인사문제는 시장단독으로는 안되는 것이며 차후 여사범법을 절대 앓을 것을 맹세하면서 사과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 현 두

- 납세필증명의 목적은 미납자에 대한 납세촉구에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그러한 폐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박 연 태

- 납세필증에 대한 문제는 당초의 견해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그 접수절차에 있어 신청서에 날인이 누락된 것은 그 당시 발견치 못하였던 것이며 시민으로서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무제한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김 상 대 의원

- 조사위원회에게는 미안하나, 본 건 중대한 문제이니 시일을 더 연장하여서라도 구체적인 조사를 요망하는 바이다.

◇의장 김 경 인

- 사법권이 불부여된 우리 의원으로서는 이 이상 조사가 불능할 것이니 행정부로 하여금 사법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토록 하는 것이 가 할 것 같다.

◇강 영 락 의원

-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하면 부시장은 시장의 추천으로 임명토록된 것이니 시장이 그 인사문제를 좌우토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겠으며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 병 규

- 항동시장문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상사를 보좌하고 부하직원을 엄독 단속하여야 할 입장에서 이번 이 문제로 하여금 시정에 암영을 던져주었다

는 점에서 시민에게 미안함을 불금(不禁)하는 바입니다.

- 본인이 개입되었다는 문제에 대하여는 항동시장이 시영으로 확정되었으나 입주자 선정에 추첨이라는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상공계장에게 편의를 보아줄 수 있으면 보아주라고 부탁한 바 있었으나 입주자선정은 추첨으로 하자는 엄연한 방침이 결정될 때에 다시 상공계장을 불러 편리를 보아주라고 하였던 것을 엄연히 취소하라고 말하였으며 상공계장도 수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본 건은 결과적으로 보아 내 자신은 개입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사정여하를 막론하고 항동시장 부정추첨에 대하여서는 시 간부의 입장에서 심심한 사과를 표하는 바이며 본인의 신분상 진퇴문제에 대하여는 도 감사계에서 본건을 조사한 바 있는 만큼 시장과 도에서 결정지를 문제이어서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 영 락 의원

- 이 문제를 회의에서 가부결의할 성질이 못되는 것이며 목포에는 경찰이 없어서 이러는 지는 몰라도 여사 증대한 형사상 문제를 방치하여 취급않는다는 것은 이해키 곤란한 처사이며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주의를 세우기 위하여 의장 자신이 직접 행정부에 연락하여 당국에 적절 조처할 것을 요망하는 바이다.

◇김 창 희 의원

- 이 문제로 인하여 수사계장은 좌천을 당하고 수사주임은 파면되었다하며 부시장도 도 감사계에서 조사하여 갔다 한다. 행정부에서는 정식으로 시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회에서는 부시장 및 관계과장의 경질방안을 건의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3청이 있어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전원가결

◇강 영 락 의원

- 행정부측에는 각각 제재를 하게끔 되었으나 우리 시의원이 관여된 문제를 여하히 생각하겠는가.

◇의장 김 경 인

- 이 문제는 우리 의회내부적인 문제일 것이니 우리끼리 선처토록 하는 것이 가할 것 같습니다.

◇김 상 대 의원 긴급동의

- 본 의원이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의장 불신임안을 제기하는 바이다. 제54회 의회시 강영낙 의원은 불과 2개월도 못되어 13만 시민을 모독하며 항도 목포를 소란케 하였다는 발언을 하였다.

- 또한 김상대 의원은 국회조사단이 래목할 적에 역두에 영접한 의원은 자기 1인뿐이었으니 이 조건으로 의장불신임이라면 부의장 및 각 분위장도 징계에 회부할 것이며 양심에 호소하여 보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거반 의회시에도 3청이 없어서 폐기된 것이 아니라, 3청을 안하여서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11명 전 의원이 양심이 나쁜 사람이 되겠는가. 목포시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1명 의원이 양심 안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이 불신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 또 한 가지 불신임 이유로는 남교동 화재사건 발생 익일 농업은행 목포 지점에서 시내 각 기관장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을 적에 각 기관장을 이사진으로 추대하였다. 그렇다면 의장은 극곤한 이재민 의 구호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의를 소집한 적은 몇 차례는 되는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 경 인

- 본 건 결의안은 긴급 동의로서 성립 안되는 것이니 문안으로서만 되는 것이니 받아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김 성 균 의원

- 정식으로 문안으로 제출하였었으나 의장은 이유에 구두설명이라고 되었다 하여 각하시켰다. 그렇다면 전반회의시 동장 직선 건의시는 왜 구두설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수리하였으며 이번에는 각하시켰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의장 김 경 인

- 도지사에게 규칙제정을 건의하자는 안건은 경이한 안건이기 때문에 구두 설명으로도 가하지만은 일개 시의회의장을 불신임하는데는 정당한 이유를 문안으로 구신하여 제출하여야 될 것입니다.

◇김 창 희 의원

- 김경인 의장을 선출할 적에는 본 의원 자신이 밀었던 것이 왜 금반에는 불신임하는데 찬성하느냐 하는데 대하여는 그 당시 선출할 적에는 무소속의 원을 내세운 것보다는 뚜렷한 정당을 가진 의원을 당선시킴으로서 완전한 정당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견지였으며 금반 불신임에 찬성한 동기는 13만 시민의 여론이 현 김경인 의장으로서 그 직을 감당키 난(難)하는 점에 서 기인된 것입니다.

농은 목포지점에서 기관장회의와 합석하였을 적에 그 의연금 각출방도를 논의하고 각 중·고등학교.....

◇의장 김 경 인

- 본 건은 의제가 되었을 적의 문제이오니 김창희 의원의 발언을 중지한다. 만약 이것이 회의규칙에 위반된 처사이라면 불신임을 감수하겠다.

- 폐회 선언하다. (하오 12시 3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4289년 10월 26일

시의원 김 창 희

시의원 김 일 섭

작성자 주 도 식